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
----------	---

제출년월일 : 2000. 4. 18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공익상 사유로 인한 과세감면조항 일부 개정
- 나.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2.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면허세 감면대상 확대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대상 확대(안 제2조)
- 나.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전액면제(안 제9조)
(전통건조물보존법 적용대상 제외)
- 다. 주차전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안 제10조, 제11조)
- 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기준완화
(안 제14조)

3.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하며, “취득하는”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한다.

제2조의2(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제1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하며, “취득하는”을 “감면 신청하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한다.

제9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9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본문 중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하고, 단서 조항 중 “임대주택법에”를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로 한다.

제18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로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를 “동법 제28조의5의”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부산광역시부산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산법인부산광역시부산신용보증조합 (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조합”이라 한다)”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 하단의 본문중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제27조의4(부산광역시사하구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본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의”로 하고, 단서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9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및 제2조의2(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단서 신설></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p> <p>②-----</p> <p>-----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p> <p>----- 감면신청하는 -----</p> <p>----- .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한다.</p>
<p>③(생략)</p> <p>제2조의2(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p>	<p>③(현행과 같음)</p> <p>제2조의2(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p> <p>-----</p> <p>----- 장애인 직계존·비</p>

현행	개정안
<p>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영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단서 신설></p>	<p>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 ----- 감면신청하는 ----- -----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한다.</p>
<p>1~4.(생략) ②(생략)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1~4.(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1~3.(생략) 4.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보존지구안의 부동산</p>	<p>1~3.(현행과 같음) <삭제></p>
<p>제10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의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p> <p>제11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p> <p>1.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연도 6월1일부터 당</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해연도 5월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p> <p>2.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p> <p>연간수입금액=영업기간중의수입금액×365/영업기간(일수)</p> <p>3.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p>	
<p>제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p>	<p>제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①----- ----- ----- ----- ----- ----- ----- ----- 2세대이상----- ----- ----- -----</p>

현 행	개 정 안
<p>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p> <p>1~3(생략)</p>	<p>-----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 ----- ----- ----- ----- 1~3(현행과 같음)</p>
<p>제18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을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8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을 제28조의2의 - ----- ----- ----- 동법 제28조의5의 ----- ----- ----- ----- ----- ----- ----- ----- ----- ----- ----- -----</p>
<p>제20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부산광역시부산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부산신용보증조합(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조합”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p>	<p>제2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p>

현 행	개 정 안
<p>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u>신용보증조합</u>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u>신용보증재단</u>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27조의4(부산광역시사하구 외국인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사하구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u></p>	<p>제27조의4(부산광역시사하구 외국인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의</u>----- -----</p>
<p>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21조의2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공제)한다. 다만, <u>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9의</u>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p>	<p>----- ----- ----- ----- ----- -----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u>----- -----</p>
<p>1·2(생략)</p>	<p>1·2(현행과 같음)</p>